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연구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2023. 9.

담당	기관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국토교통부	부동산	사무관	김경모	044-201-3415	044-201-5538
		투자제도과	주무관	최진	044-201-4543	

I. 연구용역 개요	1
II. 주요 과업 내용(제안요청 사항)	2
III. 과업수행지침	4
I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9
V. 보안대책	11
VI. 제안서 작성 요령	13
VII. 제안서의 평가	16
VIII. 계약상대자 선정	18
※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20
붙임 2. 제안서 편철 순서 및 서식	21

## I. 연구용역 개요

### 1. 과업명 :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01년)
- **부동산금융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위탁관리리츠('04~), 개발전문리츠('07~'15), 임대주택 리츠('13~) 등 **다양한 유형**이 도입
- 그간 18번의 법률 개정에 따라 자기관리리츠 중심의 **현재 법령 체계**는 조항 간 **적합성 문제**와 많은 가지·삭제 조항 존재
- 한편, 리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가제 등 **현행 관리체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개선 필요성 제기**
  - \* 리츠 시장규모: ('15년) 18.0조원 → ('20년) 61.3조원 → ('23.7월) 91.7조원
- 특히, 현재 리츠 시장의 절반 수준이 **비공모인 임대주택 리츠**로 구성되는 등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에 **미흡**
- 또한, 고금리·부동산PF 불안 등 리츠 운영 제반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여건** 마련 **필요**
- 이에, 리츠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근본적 제도 개선 및 법령 전부 개정** 필요

### 3. 용역 예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4. 사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240일)

### 5.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 사항)

### 1. 주요 과업내용

#### ①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분석

-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및 **하위 행정규칙** 조문을 전부 **분해**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상호 충돌되는 등 **적합성 문제**가 존재하는 조항 **발굴**
  - \* (필요시) 법령 및 행정규칙 조문 간 관계에 대해 이해 향상을 위한 체계도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외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준용 규정**의 **적절성** 및 **상호 충돌 여부** 조사
  - 특히, 회계, 배당, 합병·분할, 해산 등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모, 업무 위탁 등 **집합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간 **상충 여부** 집중 조사

#### ②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선 추진

- 부동산펀드, PFV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리츠(개발리츠)의 설립·인가·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검토**

- 개발리츠의 관리·감독체계 검토, **감독체계 개편방안**(23.8)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23) 결과를 반영한 관리·감독체계 **법제화 방안 마련**

- 자산 취득·처분·운용과 관련하여 **투자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자(주주)를 보호하는 관리·감독체계** 마련 필요

###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하위법령 등 전부개정안 마련

- 리츠,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등 **주체별로** 설립·인가·업무 등 **주요 체계 마련**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sup>(19)</sup> 활용  
 \* 자본시장법의 "편·절·관·조·항·호·목 체계"를 인용하여 리츠,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등 주체별로 구분하여 설립·업무·기관 등을 규정하는 체계 제시

- 체계 분석 결과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반영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및 하위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통합안**<sup>\*</sup> 검토  
 \* 예시 : 「자본시장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고시)

- 조문별 제·개정 **해설서** 작성

- 부동산투자회사법령 개정 조문별 설명자료 작성

- **법안 심사 및 규제심사 대응** 설명자료 작성

### ④ 자문회의 운영 및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 리츠업계, 금융투자업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운영, **정기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부개정안 등 법령 체계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 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2. 사업 추진일정

구 분	M1	M2	M3	M4	M5	M6	M7	M8
1.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분석								
2.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선 추진								
3.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하위 법령 등 전부개정안 마련								
4. 자문회의 운영 및 공청회 개최								
보고서 제출	착수		중간 (1차)			중간 (2차)		최종

※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 Ⅲ. 과업수행지침

### 1. 일반사항

#### 가.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자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관련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정부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각종 계획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발주기관에서 성과물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물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나.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3개월 후 6개월 이내**에 각각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최종연구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총 2회).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준공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특수지침

#### 가.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 7 -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I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1. 일반사항

-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3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모든 성과물은 원본 파일을 포함하여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라.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마.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2. 과업보고

-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나.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로서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 다.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8 -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본 용역의 취지와 주요 내용 및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 질문을 제시한다.

#### 나. 중간보고

- 본 과업의 전체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3개월 후 6개월 이내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최종 연구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총 2회).

#### 다.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원본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3.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5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5부	중간보고서(1차)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5부	중간보고서(2차)
최종보고 전	준공예정 30일 전	파일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	준공일	1부	최종보고서

- 9 -

- 10 -

## V. 보안대책

- 1)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에 의하여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2)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3)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4)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5)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8)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11 -

- 16)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17)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18)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19)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표명의 화약서를 제출한다.
- 20)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VI. 제안서 작성 요령

###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가.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13 -

- 9) 과업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을 생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1)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사항과 조사와 관련된 자료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조사 중 또는 용역 종료 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2) 용역사업 참여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대외비.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13) 측정대상자 명부는 조사대상자 공개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사 종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조사관련 데이터는 폐기 전까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유의
- 1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15)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다.

- 12 -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한다.

#### 나. 기타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본 용역에 선정된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기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하고, 이때 제출된 자료도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기술제안서는 허위 또는 추정에 의해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한다.

- 14 -

###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아래한글, Power Point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 제안서 본문은 A4크기로 50매 이내로 한다.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첨가·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가. 기술능력 평가(80점)

- 기술능력 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 득점 × 80%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A)	평점 (B)	점수 (AXB)	평가 방법
① 기관평가 (10점)	○ 연구인력 보유현황	10	주1)		정량 평가 (계량)
② 연구진 평가 (10점)	○ 연구인력의 전문성	10	주2)		
③ 참가제한 (10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10	주3)		
④ 과업집근 방법 (30점)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용역수행 능력의 우수성 -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성	30	주4)		정성 평가 (비계량)
⑤ 추진체계 및 일정 (30점)	○ 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용역 추진일정의 구체성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정성	30	주4)		
⑥ 기타 (10점)	○ 추가제안 내용의 우수성 ○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10	주4)		
계		100			

#### 주1) 기관평가(10점)

- 연구인력 보유현황(10점)

구분	매우우수 (10명 이상)	우수 (8명 이상)	보통 (6명 이상)	미흡 (6명 미만)
평점	10	9	8	7

\* 공고일 기준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 석사·박사, 변호사 등 연구인력, 전문인력 보유 수

## VII. 제안서의 평가

### 1. 평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본 업무의 특성에 맞게 발주기관 자체 심의규정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능력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85% 미만일 경우 제외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부여
- 가격평가는 2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한다.

#### 주2) 연구진 평가(10점)

- 연구인력의 전문성(10점)

구분	5년 이상	4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참여연구원의 평균 경력	10	9	8	7

\* 해당 연구와 관련된 박사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절사

#### 주3)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10점)

구분	매우우수(0회)	보통(1회)	미흡(2회 이상)
평점	10	8	7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제한 등 제재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주4) 정성(비계량) 평가는 해당 항목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점	배점 × 1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

## VIII. 계약상대자 선정

### 1.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결과의 통보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3. 기타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발주기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다.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가시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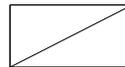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항목	포함할내용
I. 제안개요	· 제안의 목표, 범위, 특징 등
II.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등 <서식 3>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전문가 보유 현황 등 <서식 5> 3. 연구내용 : 제안업체의 주요 연구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III. 사업수행	· 구체적 사업 내용, 방법론 등 기술 1. 연구의 필요성 : 연구(관리)의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 등 최종목표 기술 2. 연구의 내용 : 주요내용 기술 3. 연구의 수행능력 : 연구의 수행능력(관련 연구경험 등)에 대한 기술 4. 추진전략 및 방법 : 주요내용별 과업수행전략 등 기술 5. 추진일정계획 : 연구(관리)업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6. 기대성과 및 활용 : 연구(관리)를 통한 활용방안 등 기술
IV. 사후관리	1. 하자보수 : 연구(관리) 결과 오류검증 및 수정방안 2. 사후관리 능력 : 연구(관리) 관련 사후관리 능력 3. 정보보안 : 정보 유출방지 및 보안대책
V. 기타사항	· 위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붙임 2 제안서 편철 순서 및 서식**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 1>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50페이지 이내)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2> 활용, 제안서와 합본가능)
4. 전문가 보유 현황 (<서식 3> 활용, 제안서와 합본가능)
5.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이력사항 (<서식4> 활용, 제안서와 합본가능)
6.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서(<서식 5> 및 <서식 6> 활용)
7.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서식 7> 활용)
8.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 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서식 1>



**과업제안서**

**용역명 :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업체(기관)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개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자본금				
	매출액				
9. 상시 종업원수					
10. 징계사항					

전문가 보유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령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2013.1.1. 이후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 금융투자업 등 이 건 관련 연구수행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 2. 실적증명서(최종보고서 표지 및 연구진 구성 관련 번 사본 등) 등 증빙자료 첨부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본인(본사)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본사 직원·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기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회사명: \_\_\_\_\_

주 소: \_\_\_\_\_

본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연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

대표이사 성 명 : (인)